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11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서영교·김민철·김병기

박상혁・박성준・소병훈

양정숙 · 오영환 · 이수진

임오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, 공기업의 장·부기관장·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주택도시공사 임·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, 공기업의 임원뿐만 아니라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,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.

이에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

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12의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

12의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도시공사 등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등록의무자) ① 다음 각 호	제3조(등록의무자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	
자(이하 "등록의무자"라 한다)	
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	
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의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
	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
	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
	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
	<u>원</u>
<u> <신 설></u>	<u>1</u> 2의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
	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도시
	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
	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
	단체의 직원
13. (생 략)	13. (현행과 같음)